술집 영업 2시간 차이 '반색' vs '울상'…형평성 논란

방역 영업 제한 시간 완화 첫 날 자영업자 반응

식당·카페 자정까지, 유흥업소·노래방 밤 10시까지

2차 피크 시간대 매출액 상당한 격차로 희비 엇갈려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가운데 영업제한 시간 완화 첫 날 자영업자들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 반면, 유흥업소·노래방은 기존 영업제한 시간인 밤 10시로 유지됐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먹고 마시는 건 같은데'라면서 유사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 연장 시 차별만 받고 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위드코로나 시행 전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정부 방침에 따라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연장키로 했다.

기존 사적모임은 최대 8명까지 모임이 가능했지만, 광주시가 일부 방역수칙을 완화키로 하면서 접종 완료자 6명이 포함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제한되던 영업시간이 자정까지로 2시간 완화됐다. 또한 실내외 체육시설도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졌다.

다만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에 식당·카페는 완화된 영업시간에 반기는 분위기지만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0시까지 제한된 영업시간에 침울한 분위기다.

북구 양산동에서 치킨집을 하는 김모(35)씨는 "영업시간이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늘어난 것은 가뭄 속 단비 같은 일이다"며 "손님들이 치킨을 다 먹지 못하고 포장해가는 일도 가끔 있었다. 항상 손님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이다. 특히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어서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서구 화정동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조모(29)씨도 "손님들이 즐겁게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는데 밤 10시가 다가오면 항상 손님들에게 눈치를 주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며 "지금은 조금 여유가 생긴 것 같아 한시름 놓인다"고 기뻐했다.

반면 기존 방역 수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유흥업소 점주들은 볼멘소리를 냈다.

가게 특성상 손님들이 2차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식당보다 이른 밤 10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북구 용봉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모(27)씨는 "전부터 위드코로나 관련 뉴스를 접하면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느정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는데 식당·카페만 2시간 연장시키고 노래방만 영업제한시킨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 결과가 이러한 차별로 나타나니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고남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사무처장은 "식품위생법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은 음식을 주로 팔고 술을 부수적으로 파는 곳, 유흥시설은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곳으로 구분돼 있다"면서 "술을 주로 팔고 음식을 부수적으로 파는 거나 음식을 주로 팔고 술을 부수적으로 파는 거나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다 같이 힘든 상황에 공평한 행정명령을 내리면 따르겠지만 단지 노래방 기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두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오히려 유흥업소보다 식당이 외부인들과 접촉이 많아 집단 감염 위험성이 높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지자체간 방역 균형유지와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을 앞두고 2주간 확실하게 감염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유흥업소 6종과 노래연습장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전국이 통일해달라고 요청해왔다"며 "부득이 영업시간 제한을 당초 밤 10시로 환원하니 양해바란다"고 말했다. /조태훈 기자

엄정한 재판 촉구 18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학동참사 시민대책위가 철거건물 붕괴사고의 엄정한 재판과 판결을 촉구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붕괴 참사' 병합 재판 관련자 '혐의 일부 부인'

건물 붕괴 인과관계·책임 소지 등 불인정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 첫 병합 재판에서 부실 철거에 개입한 공사 관계자들이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18일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공사 관계자 7명과 업체 3곳(HDC현대산업개발·한솔기업·백솔기업)의 재판을 열었다.

순차적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4곳의 재판부에서 각각 재판을 받았으나 같은 쟁점을 다루고 있어 법원이 하나로 병합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해체계획서대로 철거하지 않고 과도하게 살수한 점은 인정하지만 건물 붕괴와의 인과 관계, 책임 소지 등에 대해서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현대산업개발 측 변호인은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니라 건축물 관리법을 적용해야 한다. 건축물 관리법상 해체 주체는 철거업체, 현장 감리, 해당 관청이며 작업을 발주한 도급자에게는 주의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솔 측 변호인은 "해체 방법 미준수 과실은 인정하나 건물 붕괴와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신호수를 배치해 우회 운행을 유도했으나 버스 운전자가 수신호를 무시하고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백솔 측 변호인과 조씨는 "지시를 받고 철거 작업을 했으나 안전조치까지는 제가 담당할 부분이 아닌 것 같다"며 "영세 업체를 운영하며 신호수를 고용해 이동 정차를 유도했고 직접 살수 조치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다원소장 측 변호인은 계약에 따라 석면 해체만 담당했고 한솔과 수익금 정산을 위해 투입된 인력 등을 점검한 것일 뿐이라며 이면 계약을 통해 일반 건축물 철거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은 "피해는 너무 참담한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며 회피하는 취지로 들릴 수 있어 안타깝다"며 "지난 6월 사고 발생 후 5개월째다. 최소한의 피해 회복에 대해 논의를 하면서 법리적 다툼을 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수 기자

전두환측 "전일빌딩 헬기사격 없었다"…국과수 감정 반박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탄흔 조사 끝으로 재판 마무리

전두환(90) 전 대통령 측이 사자명예훼손 재판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전일빌딩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광주지법은 18일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6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전씨 측의 신청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광주 전일빌딩 탄흔 분석 결과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김동환 국과수 총기연구실장은 더 높은 곳에서의 사격이 아니면 10층 바닥에 탄흔을 만들어낼 수 없다며 방송실 천장에 방사형이 발견된 점, 기둥 중심으로 하향·수평·상향 탄도 탄흔이 존재하는 점을 볼 때 정지 비행 상태에서 기관총에 의한 헬기 사격 가능성을 제시했다.

전씨 측 정주교 변호사는 건물의 3D 도면에 탄흔의 궤적을 그려서 제시한 뒤 "헬기가 하향 사격을 했다면 외벽 두께, 창틀 때문에 10층 내부 창가 쪽 탄흔은 사실상 생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상향 탄흔에 대해서도 "저 위치에 총을 쏘려면 헬기가 지하에서 쏴야 하는 각도다. 헬기로는 만들 수 없는 탄흔으로, 계엄군이 금남로에서 전일빌딩으로 대응 사격하거나 전일빌딩 실내 수색 시 사격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1심에서와 비슷한 주장을 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1심에서 이미 10층의 모든 탄흔이 동일한 원인으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국과수도 모든 탄흔을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특정하지는 않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는 11월29일 변론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 기자

건강검진 속여 연가 보상금 챙긴 교직원들

도교육청, 110여만원 회수 주의조치

건강검진을 하지도 않으면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公暇)를 얻은 뒤 연가보상금까지 챙긴 교직원들이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최근 나주교육지원청과 보성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한 교직원 12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건강검진을 이유로 공가를 허가받았으면서도 당일 건강검진을 하지 않았다.

일부는 공가 당일 전에 건강검진을 했으면서도 공가를 허가받았다.

일부는 공가 당일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휴일인 토요일과 출장 갈 때 건강검진을 받기도 했다.

공가는 병가 외의 원인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 허가하는 휴가제도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관장은 건강검진이 필요할 때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병가와 공가는 연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나주교육지원청과 보성교육지원청 직원들이 부당하게 사용한 공가를 연가로 간주해 이들이 수령한 연가보상금 110여만원을 회수했다.

도교육청은 또한 이들에게 주의 조치를 했다.

도교육청은 "부적절한 휴가 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상황을 수시로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임채만 기자

'보험금 살인계획' 4명 구속 송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 계획을 세워 실제 범행까지 시도한 일당들이 검찰에 송치됐다.

화순경찰서는 18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A(19)군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 일당과 함께 또 다른 살인 계획을 공모한 혐의(살인예비)로 K(20)씨도 구속 송치됐다.

A군 등 3명은 지난 9일 오후 11시께 화순군 북면의 한 펜션으로 유인한 또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남자친구 역할, 괴한 역할, 도주 역할을 각각 나눠맡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 역할을 한 A군은 '50일 기념 여행'을 가자며 피해 여성을 해당 펜션으로 데리고 와 으슥한 곳으로 유인했다. /김동수 기자